

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

2021. 08. 03. 제정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'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'(이하 '하도급법'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)

1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가.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담당 인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나.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영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가. 내부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현안 발생 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)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
- 2)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 여부
- 3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
- 4)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 여부
- 5)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 여부

다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기업 등록 ·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

한다.

라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기업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

마. 필요 시 관련 협력기업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을 보장한다.

바.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.

사.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지침은 2021년 08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침의 변경)

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당사의 내규에 따라 변경한다.